

민간자격 광고시 유의사항 및 표시의무 안내

<2020년 ver.1.0>

【차 례】

1. 추진배경 및 목적 · 1	5. 참고 및 안내 사항 · 9
2. 광고시 유의사항 · 2	<붙임1> 광고 관련 관계 법령 · 11
3. 거짓·과장 광고 적발 사례 · 3	<붙임2> 거짓·과장 광고 유형 · 13
4. 표시의무 준수 방법 및 예시 · 7	<붙임3>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 자료 · 14

1 추진배경 및 목적

-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에 따라 민간자격 광고시,
 - 「①거짓·과장 광고 금지」와 「②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표시(표시의무)」하도록 규정
 - ※ <붙임1> 자격기본법 등 관계 법령 참조
- 이와 관련,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관계 전문기관*’은 “민간자격관리자의 법적 불이익 및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의 자격 광고에 대하여,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 중이며, 부적절 광고 발견 시 해당 기관에 이를 알리고, 개선하도록 요청함.
- 그간 광고 모니터링 추진 결과, ‘광고의 개념’, ‘거짓·과장 광고 구체적 유형’과 ‘표시의무’에 대한 인식 및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9년 3월부터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고시 표시의무 사항이 추가 및 강화된 사실의 인지 부족
- 이에, ‘광고 모니터링’과 함께,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 관련 ‘광고시 유의사항 및 표시의무 안내’를 병행하고자 함.

2

광고시 유의사항

□ “광고” 란?

- 소비자에게 자신 또는 타인의 제품 및 서비스를 다양한 전달 수단 (매체)을 통해 알리는 행위
- ⇒ 따라서, 소비자에게 자격 및 자격과 관련한 교육과정 안내, 자격 검정 및 합격자 공고, 자격취득을 위한 교재 등도 모두 광고에 해당

【광고 매체 예시】

- 인터넷 매체: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이메일, 인스타그램 등
- 인쇄매체: 신문, 브로슈어, 광고전단지 등
- 기타 자격 홍보 목적의 휴대전화 문자, 서신, 우편, 공문 등

□ 민간자격 광고시 유의사항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거짓 또는 과장된 표현

- 등록된 자격명 및 등급과 다르게 표현
-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 국가의 인정·승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 등록·공인·국가자격 예정 또는 변경으로 표현
-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취업 및 소득보장 표현

소비자의 관점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2> 참고

☞ p.3의 '거짓·과장 광고 적발 사례' 참고

꼭 표시해야 할 것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표시의무)

- 자격의 종류
- 등록 또는 공인번호
-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 자격취득·검정에 드는 '총비용', '세부내역별 비용', '세부 비용별 환불규정'
-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광고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

☞ 자세한 내용은 <붙임 3> 참고

☞ p.7의 '표시의무 준수 방법 및 예시' 참고

3

거짓·과장 광고 적발 사례

- ① 등록자격,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이 아님에도 등록자격,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으로 표현하는 광고

※ 특히, 등록자격이 아닌 경우는 미등록 자격 운영 의심으로 추가 적발

<적발사례>

“본 과정을 수료하시면 국가에서 인정한 민간자격증이 발급되며...”

“본회에서만 발급할 수 있는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입니다.”

“국가공인자격증 발급기관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교육인가(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공인 ○○○ 전문가 자격과정, 국내유일의 인증 자격과정입니다.”

- ② 공인자격이 아님에도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과 같거나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

<적발사례>

“○○자격증은 국가에 등록된 자격증으로 국가자격증과 같은 공신력 있는 유망 전문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은 민간자격심의를 거쳐 교육부의 주무부처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재되어 있는 국가에서 인정한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증입니다.”

- ③ 등록자격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정 또는 공인한 자격" 또는 "교육부가 인정 또는 공인한 자격" 등으로 표현하여 공인자격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적발사례>

“해당 자격증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 및 인가받은 민간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은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승인 등록된 자격증입니다.”

“본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격요건을 검증받아 등록한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승인기관: 농림축산부, 자격증 발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승인번호: 제2016-000000”

“민간자격 심의 통과 ... 허가번호: 제2016-000000”

“보건복지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심사 ... 국가에서 인증된 자격임”

“공동주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본 협회는 지도사를 교육·양성하고 있는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심사기관: 보건복지부, 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④ 국가자격이 아님에도 "국가자격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표현하거나 등록 자격 또는 공인자격이 아님에도 "등록 예정", "공인 예정" 등의 내용으로 표현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적발사례>

“○○○전문가 자격증 등록예정(00월00일)”

“○○자격은 민간자격 등록 신청중에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발급되는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적으로 등록이 된 자격증입니다(현재 진행중).”

“현재 등록 진행중인 자격증: ○○지도사, ○○상담사”

“○○○상담사 자격은 현재 등록 심사중입니다.”

“○○○전문가 자격증은 법에 따라 「등록→공인」의 절차를 밟고 있는
권위 있는 자격증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전문가 자격증으로
향후 국가공인자격으로 격상시킬 예정입니다.”

“○○지도사(국가자격 논의중), ○○상담사(준국가자격)”

- 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최대", "국내 유일", "최고 자격" 등의 표현으로 해당 자격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자격인 것으로 과장하는 광고

※ 해당 표현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 후, 사실이 아닌 경우 적발

<적발사례>

"국내최초 ○○관련 민간자격등록 지도자 교육 전문 협회"

"○○○센터 자격증은 우리협회 자격증 뿐입니다."

"국내 유일 ○○전문가 자격교육과정"

"현재 법적으로 등록된 ○○전문가는 한국○○센터 ○○전문가 단 하나 뿐입니다."

- ⑥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취업 보장", "고소득 가능", "채용 가산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해당 표현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 후, 사실이 아닌 경우 적발

<적발사례>

"○○자격증은 국내 모든 기업체 취업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 월평균 300만원 ~ 1,000만원 이상의 수익!"

"... 빠른길 ○○자격증! 하루 평균 2시간 강의로 월수입 300만원!"

"○○자격증을 취득하면 재직자의 경우, 승진과 연봉인상의 지름길"

4

표시의무 준수 방법 및 예시

□ “표시의무” 준수 방법

- 아래 「표시내용」을 빠짐없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격
광고 내용의 일정 부분을 할애하여 표기 (예: 광고의 상단 또는 하단)
 - ① 자격의 종류 (예: 등록민간자격, 또는 공인민간자격)
 - ② 등록 또는 공인번호 (예: 등록번호: 2019-123456 또는 공인번호: 교육부 제2019-01호)
 - ③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예: 발급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등)
 - ④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 「세부내역별 비용」,
「세부 비용별 환불규정」
 - ⑤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 유의 사항

➡ 자격증 발급(운영)기관과 실제 광고주(교육기관 등)가 다른 경우,

- (예1)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이 민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광고
- (예2)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른 기관의 민간자격을 광고
- (예3) 광고 대행자(업체), 바이럴 마케팅 대행자(업체) 등에 민간자격 광고를
의뢰하여 광고한 경우

➡ 해당 실제 광고주는,

- ☑ 상기 언급한 ‘표시의무 표시내용’을 표기하고,
- ☑ 광고주(평생교육시설 등)와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이 별개임을 알리고,
- ☑ 광고주에 대한 정보(광고기관명, 연락처 등)와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에 대한 정보(기관명, 연락처 등)를 추가 표기

➡ 상세한 표시의무 세부 항목, 표기방법, 예시 등은
<붙임 3>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 자료’ 참고

□ 표시의무 준수 예시(권장표시 사례)

<자격정보>

자 격 명	○○전문가
등록번호	2019-0000
총비용 (세부내역)	◦ 총비용: 00만원 ◦ 응시료: 00원 ◦ 자격발급비: 00원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자격발급기관	(사)△△△△협회
환불규정	◦ 응시료: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검정 당일 취소 시 30% 공제 후 환불 ◦ 자격발급비: 합격자에게 한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기관정보>

기 관 명	(사)△△△△협회
연 락 처	02)○○○-○○○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동○○○
이 메 일	abc@○○○.com
홈페이지	www.○○○.com
대 표 자	○○○

<소비자 알림 사항>

- ① 상기 "○○전문가"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 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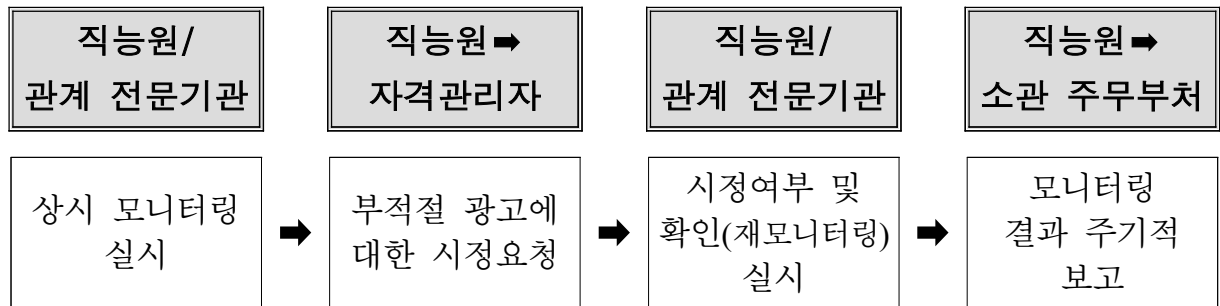
- ⇒ ① 다수의 자격증을 광고할 경우,
 ② 자격증 발급(운영)기관과 광고주(교육기관)가 다른 경우는
 <붙임 3>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 자료' p.20 참고

5

참고 및 안내 사항

□ 광고 모니터링 절차 안내

- 부적절 광고 발견 시 직능원에서 해당 기관에 시정요청 실시하고, 시정 여부에 대해 확인(재모니터링) 실시함.



- 시정요청은 해당 기관의 법적 불이익 및 소비자 피해 예방 목적이 크므로 해당 광고 시정요청 시 적극 협조 요망

※ 시정요청 불이행 또는 미흡 건은 소관 주무부처로 이송하고, 주무부처에서는 사안을 검토하여 시정명령, 수사의뢰, 고발 등 진행

□ 표시의무 '자가 점검' 추진 예정 안내

- 민간자격관리자(기관)를 대상으로, 자격 관련 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
 - 표시의무 준수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 및 그 결과 제출'을 아래와 같이 실시 예정



주) 동 과정에서 상세한 표시의무 자가 점검 및 제출 방법 안내

□ 문의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대표번호 044-415-5000) 민간자격센터

김지윤 업무원	(전화) 044-415-3730	(이메일) jykim@krivet.re.kr
장보성 전문원	(전화) 044-415-5367	(이메일) jbs1005@krivet.re.kr
임경범 선임전문원	(전화) 044-415-5389	(이메일) kblim@krivet.re.kr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 번호
3.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누구든지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 제17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
-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 1의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한 자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을 교부한 자
3.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자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자
5.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자격정보를 사용한 자

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2.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와 실제 광고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각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3.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제31조의6(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붙임2 거짓·과장 광고 유형

※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6(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1. 등록자격,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이 아님에도 등록자격,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으로 표현하는 광고
2. 공인자격이 아님에도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과 같거나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
3. 등록자격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정 또는 공인한 자격" 또는 "교육부가 인정 또는 공인한 자격" 등으로 표현하여 공인자격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 국가자격이 아님에도 "국가자격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표현하거나 등록자격 또는 공인자격이 아님에도 "등록 예정", "공인 예정" 등의 내용으로 표현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5.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최대", "국내 유일", "최고 자격" 등의 표현으로 해당 자격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자격인 것으로 과장하는 광고
6.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취업 보장", "고소득 가능", "채용 가산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교육훈련 이수시간과 교육훈련방법(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광고
8.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사용되는 교재의 금액과 구입 후 계약 파기시의 반환 기준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광고
9.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광고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유형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무부장관이 거짓 또는 과장 광고로 홈페이지와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한 광고

[붙임3]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

ver. 2019-1.0

한국 직업 능력 개발 원

I. 표시의무 의미	14	V. 표시의무 준수 예시(권장표시 사례)	19
II. 적용 광고 대상 및 매체(표시대상)	15	VI. 표시의무 관련 주요 Q&A	22
III. 표시의무 세부 항목별 개념 및 예시	15	VII. 표시의무 관련 문의처	23
IV. 작성 요령	18		

I

표시의무 의미

- ‘표시의무’는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자격취득과 관련된 중요 정보의 사전제공 및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기만하는 거짓·과장광고의 금지를 말함.
- 자격기본법령 관련 규정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 번호
3.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4. / 시행일 : 2019. 3. 5.〉

1.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2.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와 실제 광고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각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3.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 표시의무 위반(미준수) 시 처벌 규정

〈자격기본법〉 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II

적용 광고 대상 및 매체(표시대상)

1. 적용 대상

- 소비자에게 자격 및 자격과 관련하여 알리는 모든 표시·광고

※ 교육과정 안내, 자격검정/합격자 공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재 등

자격 취득 교육과정 광고 시에도 적용

2. 적용 매체

- 인터넷 매체: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이메일, 인스타그램 등
- 인쇄매체: 신문, 브로슈어, 광고전단지 등
- 기타 자격 홍보 목적의 휴대전화 문자, 서신, 우편, 공문 등

III

표시의무 세부 항목별 개념 및 예시

아래 민간자격 표시의무 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될 시, 표시의무 미준수로 판단됨

1. 자격의 종류

- **자격명:** 등록된 민간자격의 명칭
 - ‘민간자격등록증’ 상 자격명과 동일하게 표시

예시

• 자격(종목)명: 심리상담사

- **자격종류:** 등록된 민간자격의 종류
 - 해당 자격이 등록민간자격 또는 공인민간자격임을 표시

예시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또는 ‘공인민간자격’)

2. 등록 또는 공인번호

- (등록민간자격일 경우) '민간자격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표시
- (공인민간자격일 경우) '민간자격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와 '민간자격공인증서'에 기재된 공인번호 표시

예시	• 등록번호: 2016-123456 • 공인번호: 교육부 제2016-01호
----	--

※ 소비자가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연결 기능 권장

3.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 발급기관명: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 '민간자격등록증' 상 등록자격관리자 명칭과 동일하게 표시
- 연락처: 소비자가 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 및 상담할 수 있는 대표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등) 표시
- 소재지: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의 소재지

예시	• 발급기관명: ○○○○협회 • 연락처 - 전화번호: 02-123-4567 - 이 메 일: ○○○@○○○.com - 홈페이지: www.○○○.kr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
----	---

4.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자격 취득을 위해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모든 비용으로,
 - 교육과정 연계시 교육과정비 및 교재비, 자격응시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 보수교육비, 연수비, 자격 갱신비용 등 상세히 명시
- 환불: 소비자가 자격 취득을 위해 지불한 비용별 환불 규정

예시	• 자격취득을 위한 총비용: ○만원 • 총비용의 세부내역 ① 응시(검정)료: ○만원 ② 교재비: ○만원 ③ 자격증 발급비: ○만원 • 환불정보 ① 응시(검정)료: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검정 당일 취소 시 30%공제 후 환불 ② 교재비: 교재 반환 시 100% 환급 ※ 교재가 훼손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 ③ 자격증 발급비: 합격자에게 한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	--

5.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 아래의 내용에 ‘자격명’을 적시하고 그대로 명시

〈소비자 알림 사항〉

- ① 상기 “○○○전문가”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공인민간자격’의 경우, 동 내용을 명시하지 않음.

※ 부분 공인의 경우, 공인 이외 등급을 자격명과 함께 명시(예: ○○자격, 0급)

6.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과 실제 광고주(평생교육시설, 학원 등)가 다른 경우의 표기 내용

■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과 실제 광고기관(교육기관, 광고 및 마케팅 업체 등)이 다를 경우, 그 사실과 각 기관에 대한 정보를 표기

- 즉, 평생교육시설 등이 타 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을 광고하는 경우(평생교육시설, 학원 등 = 광고주),
- ① 앞서 언급한 ‘표시의무 세부 항목’을 표기하고,
- ② 광고주(평생교육시설 등)와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이 별개임을 알리고,
- ③ 광고주에 대한 정보(광고기관명, 연락처 등)를 추가적으로 표기

IV

작성 요령

1. 배치(위치)

-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등 포함)
 - 표시의무 기재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표시란'을 별도로 마련하여 한 화면에 표시(예: '민간자격증 소개' 메뉴 마련)
- 인쇄매체(신문, 소책자, 전단지 등)
 - 광고 내용의 상단 또는 하단에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
 - 표시의무의 모든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전에 인쇄매체의 광고면적 등을 충분히 검토
- 기타 자격 홍보 목적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
 - 광고 내용의 상단 또는 하단에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2. 글자색 및 크기

- 바탕색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으로 표시
- 주 표시면에 일반적으로 글자크기* 10포인트(pt) 이상, 줄 간격 130% 이상으로 하나, 소비자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여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12픽셀 이상

바탕체 글자크기에 준한 활자 크기 예시

10포인트(PT)

자격명: ○○○지도자

자격종류: 등록(비공인)민간자격

등록번호: 2016-123456

13포인트(PT)

자격명: ○○○지도자

자격종류: 등록(비공인)민간자격

등록번호: 2016-123456



표시의무 준수 예시(권장표시 사례)

광고주 또는 교육과정운영기관	= (일치)	민간자격관리자(자격 발급자)
-----------------	-----------	-----------------

※ 1개 등록민간자격 광고 시

자격정보

자 격 명	〇〇전문가	자 격 의 종 류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9-0000	자격발급기관	(사)△△△△협회
총비용 (세부내역)	총비용: 〇〇만원 - 응시료: 〇〇원 - 자격발급비: 〇〇원	환불규정	- 응시료: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검정 당일 취소 시 30% 공제 후 환불 - 자격발급비: 합격자에게 한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기 관 명	(사)△△△△협회	대 표 자	〇〇〇
연 락 처	02)〇〇〇-〇〇〇	이 메 일	abc@〇〇〇.com
소 재 지	서울특별시 〇〇〇동〇〇〇	홈페이지	www.〇〇〇.com

〈소비자 알림 사항〉

- ① 상기 “〇〇전문가”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다수 등록민간자격 광고 시

자격명	자격의 종류	등록번호	자격발급기관	총 비용 및 세부 내역
1. ○○안전지도사	등록 민간자격	2019-00***1	△△△협회	〈총 비용: 00만원〉 응시료: 00원, 교재비: 00원, 자격발급비: 00원
2. ○○코딩지도사	등록 민간자격	2019-00***2		〈총 비용: 00만원〉 응시료: 00원, 교육비: 00원, 교재비: 00원, 자격발급비: 00원
3. ○○교육강사	등록 민간자격	2019-00***3		〈총 비용: 00만원〉 응시료: 00원, 교재비: 00원, 자격발급비: 00원
4. ○○상담사	등록 민간자격	2018-00***4		〈총 비용: 00만원〉 응시료: 00원, 교재비: 00원, 자격발급비: 00원
5. ○○복지사	등록 민간자격	2018-00***5		〈총 비용: 00만원〉 응시료: 00원, 교재비: 00원, 자격발급비: 00원
6. ○○분석사	등록 민간자격	2017-00***6		〈총 비용: 00만원〉 응시료: 00원, 교육비: 00원, 교재비: 00원, 자격발급비: 00원
자격관리기관 정보	기관명: △△△협회 대표자: ○○○ 연락처: 02) ○○○-○○○○ 이메일: ○○○@mail.net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 ○○○○ 홈페이지: www. ○○○.co.kr		환불규정	1. 응시료: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검정 당일 취소 시 30%공제 후 환불 2. 교재비: 교재 반환 시 100% 환급 ※ 교재가 훼손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 3. 교육비: 기 납부 수강료 전액(A)-(A) * $\frac{\text{수강포기시까지의 이용기간}}{\text{전체이용기간}}$ 4. 자격발급비: 합격자에 한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소비자 알림사항	① 상기 ○○안전지도사 포함 6개 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가 자격의 우수성 등을 인정한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홈페이지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자격별로 '총 비용 및 세부내역', '환불규정' 등이 다른 경우 각각 명시

광고주 또는 교육과정운영기관	≠ (불일치)	민간자격관리자(자격 발급자)
-----------------	------------	-----------------

〈자격정보〉

자 격 명	○○전문가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9-0000	자격발급기관	(사)△△△△협회
총비용 (세부내역)	총비용: 00만원 - 응시료: 00원 - 자격발급비: 00원	환불규정	- 응시료: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검정 당일 취소 시 30% 공제 후 환불 - 자격발급비: 합격자에게 한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기관정보〉

※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운영기관(광고주)과 자격관리(발급)기관은 서로 별개임을 안내 드립니다.

1) 교육과정운영기관 정보

기 관 명	(주)□□□교육원	연 락 처	02)○○○-○○○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동○○○
대 표 자	○○○	이 메 일	abc@○○○.com	홈페이지	www.○○○.com

2) 자격관리(발급)기관 정보

기 관 명	(사)△△△△협회	연 락 처	031)○○○-○○○	소 재 지	경기도 ○○○동○○○
대 표 자	○○○	이 메 일	def@○○○.com	홈페이지	www.○○○.com

〈소비자 알림 사항〉

- 상기 “○○전문가”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VI

표시의무 관련 주요 Q&A

Q. 표시의무는 언제부터 표기하여야 하나요?

- A. 표시의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적 준수사항이므로(자격기본법 제33조),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즉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Q.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격의 시험일정 공지, 합격자 발표만 하는 경우에도 표시의무를 준수해야 하나요?

- A. 네.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모두 광고에 해당하므로 표시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Q. 표시의무 준수 사항을 꼭 한 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나요?

- A. 네. 표시의무는 소비자가 자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표시의무 사항은 주 표시란을 마련하여 한 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주표시란'이란 무엇인가요?

- A. 주표시란은 소비자가 민간자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화면을 말합니다. 홈페이지 상, 민간자격 정보 제공을 위한 '민간자격 소개란(메뉴)'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별도 페이지가 없는 경우라도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화면에 표시의무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Q. 등록민간자격을 여러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모든 자격에 대하여 표시의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나요?

- A. 네. 표시의무 준수 사항은 자격별로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운영하고 있는 자격 수가 너무 많아서 홈페이지 한 화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 표시의무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링크 연결 또는 파일(한글, PDF 등) 탑재를 통하여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표시의무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 A. 표시의무는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지켜야할 사항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라도 인쇄물 등을 통해 자격을 광고한다면 앞서 안내한 '권장표시사례의 인쇄매체 지면광고'를 참고하여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Q. 부분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표시의무를 어떻게 준수해야 하나요?

- A. 부분공인이 있는 민간자격일 경우, 공인 급수와 비공인 급수에 대한 표시의무 사항을 분리하여 소비자가 구별하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자격명: ○○○자격
- 등급별 정보: 1~2급(공인민간자격), 3~5급(등록민간자격)

Q. 기재란이 협소한 경우(휴대전화 문자 혹은 팸플렛, 포스터 등에 광고), 표시의무 사항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 A. 광고 기재란이 협소하더라도 표시의무는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따라서, 광고 실시 전에 표시의무 명시 분량을 감안, 광고 매체 및 면적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I

표시의무 관련 문의처

- 문의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대표번호 044-415-5000) 민간자격센터
- 상기 외 추가적인 연락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
 - ➡ 민간자격 관련 문의처 <바로가기> 클릭